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1

2024. 3.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월 5일, 김춘곤 의원(찬성자 1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3.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춘곤 의원)

1. 제안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7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2023. 7. 18.에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고궁 등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보훈보상대상자 법령 개정 사항 >

구 분	개정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개정안의 필요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1]는 재해사망 군경 및 공무원,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등 대부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해당함.

○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공무수행에 따른 신체적 희생으로 인해 전역 혹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2].

< 2022년~2026년 보훈보상대상자 추계 >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훈보상대상자	7,354	7,878	8,402	8,926	9,450

※ 출처 : 국가보훈부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추계에 따르면 그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등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 서울시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람료 면제(안 제9조제1항제17호)

---

1)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혹은 상이를 입은 사람

2) 김문길(202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시는 본 조례 개정(시행 2010. 7. 15.)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부여된 고궁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추진 요청’(법무담당관-3019, 2021.2.23.)에 따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등을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2항 별표 9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아래 표와 같음.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은 시행령에서 명시한 감면 시설 중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해당하므로 상위 법령의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에는 법제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무료관람) ① ---------- ---------- ----------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따라서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시립미술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과의 일관성·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1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1월 05일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 김영옥, 김혜영, 남창진, 송경택, 윤영희, 이봉준,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최유희, 최진혁, 황철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무료관람) ① ----------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생 략)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관료) ①·② (생 략)	제16조(대관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③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할 수 있음

○ 현행 동 조례 제8조(관람료)제1항제2호[1]에 따라 특별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어 본 개정안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 시 관람료 수입 순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개최한 특별전[2] 통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문의결과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단순 추정 시 실제 무료관람객 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구분	종 류	관람료	관련 조례	비고
1	상설전	무료	현행 제8조(관람료)제1항제1호	
2	소장작품 기획전	무료		
3	기획전	현행 무료(심의결과)	현행 제8조(관람료)제1항제2호	
4	**특별전**	**일정금액 관람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2023. 4. 20. ~ 2023. 8. 20. ≪에드워드 호퍼:길 위에서≫ 성인 관람료 **17,000원**(얼리버드 성인 2인 20,000원) 등